

전력기술관리법 질의 회신

☎ 자료제공 : 기술지도과 ☎

☎ 02)875 - 4474

○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기준 고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거리 산정방법

1. 규정

-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9호, '97. 7. 6) 제 20조의 규정에, 발주자가 동일한 경우에 공사현장간의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는 10km)미만인 경우 통합감리가 가능함

2. 처리방법

- 가. 발주자만이 통합감리를 발주할 수 있음
- 나. 현장간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아닌 도로상의 거리로 계산함
- 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시·도와 경계선에 있는 경우 거리계산방법
 -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현장과 경계지점까지의 거리) × 3 + 시·도의 현장까지 거리 = 30km이하가 되어야함
- 라. 거리산정은 제출 도면 등으로 확인

○ 감리원배치변경신고 신청서류 및 조치방법

1. 규정

-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기준 고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 현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 감리원 변경사유(발주처의 확인을 필하여 제출)
- 나. 변경감리원의 감리원수첩 사본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 처리방법

- 가. 감리원배치신고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리원배치변경 신고서도 감리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27호 서식(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에 감리원변경사유 및 변경감리원 수첩사본을 첨부

3. 지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지부에서는 감리기간 감소 및 감리원 등급을 낮게하여 감리업자로 부터 변경신고가 접수될 경우 발주자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감리원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 감리업체에서 본 협회에 감리원 변경신고는 하였으나 시·도지사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1.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

정에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 변경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 가. 감리원배치신고를 접수 받고 있는 지부에서는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보유인력으로 감리원배치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는 감리업자에게 의무사항이므로 감리원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은 감리업자의 책임이 됨

3. 처리방법

- 감리원배치신고는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보유인력을 기준으로 배치신고를 접수(모든 자료는 전산상의 기준으로 업무처리)

○ 비상주감리원배치 여부

1. 규 정

-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기준 고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비상주감리원은 직접인건비 비율의 20%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 가. 고시에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을 상주감리원의 20%를 적용함을 원칙으로하고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해석에 논란이 있었음
- 나. 현 실정으로 책임감리원이 초급 또는 중급 감리원을 배치하는 현장에는 감리원의 기술상 문제가 있음
- 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은 부분상주가 되므로 책임감리원이 현장에 상주치 않는 기간이 있음
- 라. 비상주감리원의 배치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처리방법

- 비상주감리원은 필히 배치토록하고 직접인건비의 20%를 원칙으로하고 총공사기간동안 계속 배치되어야 함(타 현장의 비상주 감리원 중복 배치수는 제한이 없음)
- 비상주감리원은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특수한 경우 사회적 타당성에 의하여 추가배치가 가능하나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없음

○ 감리원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1. 규 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자에 소속된 감리원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전기설비의 공사에 대한 감리배치기간에 한 하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 가. 비상주감리원은 감리기간동안 계속 배치되어 있으므로 감리가 계속배치되어 있음
- 나. 수전설비 1,000kW 미만의 전력시설물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고 일정기간마다 점검하고 있음(대행사업체 등에서 대행관리)
- 다. 자체감리원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겸임가능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있음

3. 처리방법

-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수전설비용량 1,000kW 이상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하므로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이 불가능함
- 나. 1,000kW 미만의 경우 대행으로 일상점검이 가능하므로 감리업체의 부분상주 감리원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가능 여부에서 감리원이 상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전기안

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부분상주감리원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이 불가능함

- 다. 소속직원을 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겸임토록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제4호의 규정과 상이하므로 겸임이 불가함

○ 책임감리원이 2인이상 가능 여부

1.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감리원은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2. 문제점

- 책임감리원을 1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 비상주감리원과 유사한 내용이나 책임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므로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책임소재에 어려움이 있음

3. 처리방법

- 책임감리원은 다수가 되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책임감리원을 공사의 특성에 감안하여 사회적 타당성에 맞추어 다수인으로 하여도 배치가 가능함

○ 감리원을 배치하고 감리원 배치신고시 14일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

1. 규정

-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기준 고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감리원을 배치한 후 14일이내에 감리원배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 감리원배치신고가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시에 저촉됨
- 14일을 초과하여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여 감리원배치한 것을 기일이 초과하였다고하여 배치신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음

3. 처리방법

- 가. 3월말까지 감리원배치신고가 감리원을 배치하고 신고가 14일을 초과하여도 신고 접수함
- 나. 4월1일 이후에는 배치신고를 지연시킨 부분등 적법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는 처리방안(감리원배치현황신고 및 관련업무의 홍보 시행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처리함

‘위대한 사람’

소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소년은 집을 나와 오랫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험한 산길을 헤매고, 모래뿐인 사막을 휘청거리며 걸었다. 목이 마르고 온몸이 부서질 듯 피곤했다. 그러나 끝내 소년은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소년은 마침내 지쳐서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아, 그런데 소년이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위대한 사람’은 집에 있었다. 맨발로 달려나와 끌어안아 주시는

아아, 그분은 바로 어머니였다.

♡ 위대한 사람, 고은